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정비하고, 야간(조조시간 조명 이용 시 포함)·토요일·공휴일 가산제 및 체육경기용의 전용사용제 징수기준을 신설함.(안 별표 2 제2호).

나.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징수기준을 신설함.(안 별표 2 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'22. 6. 9. ~ '22. 6. 29.) 결과: 의견 없음.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의 표 중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란 아래에 파크골프장란 및 파크골프장물품대여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테니스장	면당 1회 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·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·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·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
	월간 정기사용 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	108,000~154,000원
	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	70,000~150,000원
파크골프장	어린이(6세 이상 12세 이하) 1회당	2,000 ~ 3,000원
	청소년(13세 이상 18세 이하) 1회당	3,000 ~ 4,000원
	성 인(19세 이상) 1회당	4,000 ~ 6,000원
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 ~ 2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2호 중 테니스장
란의 개정규정은 기 체결된 테니스장 사용·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
다음 날부터 시행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 <p>1. 수상이용시설 (생략)</p> <p>2. 체육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축 구 장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야구장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성인야구장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테니스장</td> <td>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</td> <td>4,500~6,400원 <신설></td> </tr> <tr> <td>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<신설></td> <td>68,000~96,000원 <신설></td> </tr> <tr> <td>국궁장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축 구 장	(생략)	(생략)	어린이야구장	(생략)	(생략)	성인야구장	(생략)	(생략)	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(생략)	(생략)	테니스장	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4,500~6,400원 <신설>	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<신설>	68,000~96,000원 <신설>	국궁장	(생략)	(생략)	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 <p>1. 수상이용시설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체육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축 구 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야구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성인야구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테니스장</td> <td>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</td> <td>7,000~11,000원 ※ 토요일,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</td> </tr> <tr> <td>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</td> <td>108,000~154,000원 70,000~1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국궁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축 구 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어린이야구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성인야구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테니스장	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,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	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	108,000~154,000원 70,000~150,000원	국궁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축 구 장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야구장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인야구장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테니스장	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4,500~6,400원 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<신설>	68,000~96,000원 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궁장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축 구 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야구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인야구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테니스장	면당 1회2시간 이내, 단체 독점 사용 시	7,000~11,000원 ※ 토요일,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※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. ※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% 가산함. 다만, 토요일,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월간 정기사용시(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)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(체육경기) 시	108,000~154,000원 70,000~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궁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
축구교육장	(생략)	(생략)
배드민턴장	(생략)	(생략)
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	(생략)	(생략)
<신설>	<신설>	<신설>
<신설>	<신설>	<신설>
비 고: 이용시간은 06:00부터 22:00까지로 하되 일출·일몰시간 과 조명시설 유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 (조조시간 : 06:00 ~ 09:00)		

3 ~ 8. (생략)

개 정 안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
축구교육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배드민턴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파크골프장	어린이(6세 이상 12세 이하) 1회당	2,000 ~ 3,000원
	청소년(13세 이상 18세 이하) 1회당	3,000 ~ 4,000원
	성 인(19세 이상) 1회당	4,000 ~ 6,000원
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 ~ 2,000원
(현행과 같음)		

3 ~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한강공원이용시설의 징수기준을 신설(무료→유료)하거나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.

4. 작성자

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심정은 ☎ 02-3780-0839